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사용기준 제한 식품원료가 함유된 품목 제조보고 수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북구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이후 7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를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도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 식품원료 판단기준 (7), ①, ㉠에 따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 ‘삼백초’, ‘어성초’, ‘황칠나무’, ‘한련초’, ‘가시여지’ 등은 가공 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 시 50% 미

만(정제수 제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과)에서는 ‘삼백초’, ‘어성초’, ‘황칠나무’, ‘한련초’, ‘가시여지’가 사용된 식품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토종식품 등 3개 업소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삼백초’, ‘어성초’, ‘황칠나무’, ‘한련초’, ‘가시여지’의 원료가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제조한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된 ‘○○어성초와 삼백초’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식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